

정 관

한국쓰리엠 주식회사

한국쓰리엠 주식회사 정관

인증 : '77. 9.16 ('77 년 동부 제 841 호)

제 1 장 총 칙

개정 : '23. 3. 31

제 1 조 (상호)

본 회사의 상호는 “한국쓰리엠 주식회사”라 하며 영어로는 “3M KOREA CO., LTD.”로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개정 : '18. 11. 20

본 회사의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 전기제품, 접착테이프와 접착제 및 각종 저밀도 연마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각종 쓰리엠 제품의 제조, 판매
- 나. 의료용구, 위생용품 및 화장품의 제조, 판매
- 다. 위 제품들에 대한 초기 판매 후 필요한 유지 서비스의 수행
- 라. 수출입업
- 마.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 바. 생활용품, 문구류, 사무용품 및 자동차용품의 제조판매
- 사. 옥외광고물의 제작,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업
- 아. 의약품 도매업
- 자. 정보통신공사업
- 차. 물류창고업
- 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 타. 위 각호에 부수 또는 도움이 되는 기타 사업

제 3 조 (본점)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개정 : '84 . 12. 26

제 4 조 (공고)

개정 : '18. 11. 20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3m.co.kr>)에 공고한다. 다만,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지인 “코리아헤럴드”에 게재한다.

제 2 장 자 본 과 주 식

제 5 조 (수권주식)

개정 : '05. 8. 12

개정 : '23. 3. 31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는 1,000,000,000주이다.

제 6 조 (발행주식)

개정 : '84. 12. 26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38,640주이다.

제 7 조 (주식의 종류와 일주의 금액)

개정 : '84. 12. 26

회사가 발행하는 모든 주식은 보통주식 1종으로 하며,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 8 조 (주식에 대한 납입)

인수한 주식에 대한 납입은 현금으로 한다.

제 9 조 (주권)

회사의 주권에는 주권의 번호, 그 주권이 표상하는 주식수와 주주의 성명을 기재하며, 발행시에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한다.

제 10 조 (주식의 양도)

개정 : '18. 11. 20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함에 있어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소지한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였을 때 회사는 주주명부에 그 양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11 조 (주권의 재발행)

개정 : '18. 11. 20

종전에 소지하던 주권에 갈음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받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다음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권이 분실되었거나 판별할 수 없도록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제권판결정본 또는 부분

나. 주식의 분합의 경우에는 해당주권

제 12 조 (주주의 등록)

모든 주주, 질권자, 수탁인, 법정대리인 또는 그들의 대리인은 회사가 정한 서식에 따라 성명, 직위, 주소 및 인감(서명을 상용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서명)과 그 변경에 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대리인들은 또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 (주주명부 기재의 정지)

개정 : '18. 11. 20

회사는 사업년도 종료 익일부터 그 후 개최되는 첫 정기주주총회 폐회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또한 필요한 때에는 사전공고와 등록된 주주에 대한 개별통지를 하고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다.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 14 조 (총회의 시기)

개정 : '89. 10. 30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년1회 소집한다.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가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15 조 (총회의 장소)

정기 및 임시주주총회는 한국에 있는 회사의 본점 또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한국 내외의 기타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 16 조(총회의 통지)

개정 : '18. 11. 20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일자, 시간, 장소와 회의의 목적사항을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한국 내에 거주하는 주주에게는 등기통상우편으로, 기타 주주에게는 등기항공우편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이러한 서면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 17 조 (총회의 소집자와 사회자)

개정 : '18. 11. 20

1. 법률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대표이사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8 조 (의결권)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각 주주는 그 명의 등록되어 있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 19 조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행사)

개정 : '18. 11. 20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본인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회사의 주주임을 요하지 아니하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모든 대리인은 주주총회의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0 조 (결의의 채택)

법률 또는 본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의 직접 또는 대리인에 의한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다.

제 21 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개정 : '18. 11. 20

1.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총회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 시, 서면결의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개정 : '18. 11. 20

1.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의 경우, 회사는 총회 소집통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
 - 나.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 다. 전자투표를 할 기간(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한다)
 - 라. 그 밖에 주주의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3.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주주 확인 및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1조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23 조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다. 의장과 출석한 이사들은 의사록에 서명날인 한다. 의사록은 회사의 기록으로 보존된다.

제 4 장 이 사 와 임 원

제 24 조 (이사와 감사의 원수와 선임)

개정 : '18. 11. 20

회사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해임될 수 있다. 이사나 감사의 해임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또는 대리인이 출석한 주주총회에서 그 의결권의 3분의 2의 다수결로 채택된다.

제 25 조 (임기)

개정 : '96. 12. 16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개최되는 제3차 정기주주총회 종료시에 만료되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시에 만료된다.

제 26 조 (결원)

이사 또는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이러한 결원이 생긴 후 가능한 한 빨리 결원 보충을 위하여 소집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후임이사나 감사를 선임한다. 이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임된 이사나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27 조 (이사회 의 권한)

이사회는 회사의 기본정책수위를 포함한 모든 사업경영에 관한 중요사항과 법률 또는 본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의결로서 결정한다.

제 28 조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및 기타 임원)

개정 : '18. 11. 20

1. 회사의 주주들은 그 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선임한다.
2. 회사에는 1명의 대표이사를 둔다.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장을 겸임한다.
3. 대표이사는 모든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4.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5. 이사회는 기타 임원들을 수시로 선임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임원들의 임무 및 직책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29 조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개정 : '18. 11. 20

1.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회계 및 재무기록을 감사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30 조 (감사의 직무)

개정 : '84. 12. 26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 31조 (감사록)

개정 : '84. 12. 26

감사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감사록은 회사의 기록으로 보존된다.

제 32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

개정 : '18. 11. 20

1.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2.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채택되는 일정한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 33조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개정 : '18. 11. 20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면제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34 조 (소집)

개정 : '18. 11. 20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요청하거나, 각 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5 조 (회의 통지)

개정 : '18. 11. 20

1. 이사회에 관한 서면통지서에는 회의의 일자, 시간, 장소와 회의소집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한국 내에 거주하는 이사 및 감사에게는 등기통상우편으로, 기타 이사 및 감사에게는 등기항공우편으로 적어도 회의개최 2일 전에 이를 발송하거나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이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이러한 서면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3. 회의 전에 이사 및 감사 전원으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은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도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 36 조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회의)

개정 : '18. 11. 20

1.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 또는 동시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방법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을 때는 의사록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 37 조 (회의의 장소)

모든 이사회 회의의 장소는 회사의 본점 또는 당해 회의를 소집하는 임원이 지정하는 한국 내 또는 국외의 다른 장소로 한다.

제 38 조 (이사회 의장)

개정 : '18. 11. 20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모든 이사회를 사회한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사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39 조 (결의의 채택)

개정 : '18. 11. 20

이사회 회의의 모든 결의는 재임중의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이사회 회의의 결의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40 조 (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41 조(의사록)

개정 : '18. 11. 20

모든 이사회 회의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다.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들은 의사록에 서명, 날인한다. 의사록은 회사의 기록으로 보존된다.

제 6 장 회 계

제 42 조 (회계년도)

개정 : '92. 11. 30

회사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되어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제 43 조 (회계장부)

회사의 회계장부는 한국의 법령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적 회계관례에 따라 기재된다.

제 44 조 (재무제표)

개정 : '18. 11. 20

1. 이사는 매 결산기에 영업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 전에 감사에게 제출한다.
 - 가. 대차대조표
 - 나. 손익계산서
 - 다. 자본변동표
 - 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2.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제1항의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와 이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은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에 제출되어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에 제출되어 그 내용이 보고되어야 한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 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 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 나.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6. 제5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위 가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5 조 (공고)

개정 : '18. 11. 20

대표이사는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거나 제44조 제5항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한다.

제 46 조 (이익금의 처분)

어느 회계년도에 대한 회사의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해당년도의 총수입으로부터 감가상각비와 이자를 포함한 사업경비를 공제한 후의 잔액을 동회계년도의 순이익으로 하며 이 순이익에서 충분한 납세준비금을 적립한 후 이를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처분한다.

- 가. 전회계년도에서 이월된 자본 결손의 전보
- 나. 법정준비금 및 이사회에서 결정한 기타 준비금의 적립
- 다. 주주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

제 47 조 (배당금의 지급)

개정 : '18. 11. 20

1.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다만, 제44조 제5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배당금은 회사의 각 회계년도 종료일 현재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된다.
2. 회사는 회계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현금으로 배당할 수 있다. 배당금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 7 장 부 칙

제 48 조 (이행세칙)

회사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 회사의 업무 집행상 필요한 이행세칙과 기타의 규칙을 채택할 수 있으며, 또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를 개정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 49 조 (적용법률)

본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와 한국의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 50 조 (정관개정)

본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위 결의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또는 대리인이 출석한 주주총회에서 그 의결권의 3분의 2의 다수결로 채택된다.

제 51 조 (최초의 회계년도)

회사의 최초의 회계년도는 회사설립일에 개시되어 다음 9월 30일에 종료된다.

위를 정 하기 위하여 1977 년 9 월 15 일 본 정관을 작성하다.

발기인 성명 (날인)

발 기 인 주 소

정 수 창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 4가 319 의 17
김 신 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작동 307
박 용 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15의 183
리차드에이 . 맥레이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가 23
박 춘 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0 의 3
김 흥 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의 10

김 의 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신동 85의 6